



## 유럽의 퇴직연금 사업자 지침(IORPII) 이행 현황

김혜란 연구원

유럽집행위원회는 유로지역 퇴직연금지침인 IORPII 지침 이행과 관련하여 17개 국가에 대해 위반사례를 지적하였음. 유로지역 연금지침은 IORPs(퇴직연금 사업자)의 운영 및 감독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으며, 2005년 9월 처음 시행됨. 새로 개정된 IORPII는 퇴직연금에 대한 지배구조 및 리스크 평가, 그리고 회원국 간 의사소통에 중점을 두고 개정되었음. 유로지역의 IORPII 이행은 회원국 간의 이해상충 문제와 리스크 평가 등에 따른 비용 및 추가 인력 투입으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유럽집행위원회는 유로지역 퇴직연금지침인 IORPII(Institutions for Occupational Retirement Provision Directive)의 회원국 이행과 관련하여 17개 국가가 이행이 미비함을 지적하였음<sup>1)</sup>

- IORPII는 퇴직연금 사업자(Institutions for Occupational Retirement Provision, 이하, 'IORPs') 지침으로서 기존의 유로지역 연금지침에 43개의 새로운 조항을 추가하여 2017년 1월에 개정되었으며, 회원국들의 이행 기간을 2019년 1월 13일까지로 함
- 유럽집행위원회가 2019년 4월 회원국들의 이행 현황을 검토한 결과, 부분적 전환조치를 취한 5개 국가를 비롯해 전환조치에 대해 어떠한 언급도 없는 12개국을 포함 총 17개국이 이행을 잘 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였음
  - IORPII를 충분히 이행한 국가는 총 11개국으로 오스트리아, 벨기에, 크로아티아, 에스토니아, 핀란드, 헝가리, 이탈리아, 리투아니아, 슬로바키아, 영국임
  - IORPII의 이행이 부분적으로 불충분한 나라는 불가리아, 체코, 독일, 라트비아 및 네덜란드이며,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국가는 키프로스, 프랑스, 그리스, 아일랜드, 룩셈부르크, 몰타, 폴란드, 포르투갈, 루마니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임<sup>2)</sup>

1) IPE(2019. 4. 16), "Commission launches infringement action against 17 states over IORP II"

2) 독일은 이행 마감일에 IORPII 관련 법안이 발효, 프랑스는 IORPII 이행을 위한 법안인 'loi Pacte'가 4월 둘째 주에 의회에서 채택, 그리고 스웨덴은 7월부터 IORPII가 시행될 계획임

■ 2005년 9월 처음 시행된 유로지역 퇴직연금지침(EURO Pension directive)은 퇴직연금 사업자의 운영 및 감독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음

- 인구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퇴직연금의 지속가능성 높이고, IORPs가 장기투자자로서 국경 간 투자기회를 활용하여 자본시장과 투자이익, 그리고 유로지역 경제발전에 기여도를 높이고자 하였음
  - 회원국 간 IORPs를 인정하도록 하고, 국경을 넘는 서비스 제공을 확대함
- 동 지침에 따르면 IORPs는 연금수령자가 최적의 이익을 얻을 수 있게 자산을 운용해야 하고, 안정성 및 유동성 그리고 수익성도 함께 고려하여 투자해야 하고, 자본시장 규제 및 시스템이 잘 정비된 시장에 주로 투자되어야 하는 등의 투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음<sup>3)</sup>
- 또한 연금운용이 자산·부채 관리(ALM) 방식으로 이행되어야 함을 명시적으로 제시하고 있음
- 그러나 각 회원국의 연금제도가 복잡하고, IORPs가 유로지역 퇴직연금지침과 자국법의 이중적 적용을 받는 문제가 발생함

■ 개정된 IORP II는 퇴직연금 지배구조 및 자체 리스크 평가 그리고 회원국 간 의사소통에 중점을 두고 개정되었음

- IORP II는 규제가 아닌 지침으로서 회원국들이 국내법에서 이행하는 방식은 다를 수 있음
- IORP II의 목적은 퇴직연금의 건전성 확보 및 연금 가입자 및 수익자 보호, 회원과 수익자에게 더 많은 정보 제공, 국경 간 서비스 제공에 있어 특정 장애 제거 및 장기투자 활성화임
- IORP II의 내용은 IORPs의 새로운 지배구조, 자체적인 리스크 평가 그리고 감독자의 권한 강화임<sup>4)</sup>
  - IORPs는 기금의 규모, 복잡성 그리고 리스크 프로파일에 따라 효과적인 지배구조를 갖추어야 함
  - IORPs는 지배구조를 감안하여 자체적으로 정기적인 위험 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문서화해야 함
  - IORPs는 연간 연금급여명세표를 가입자 또는 수익자에게 교부하는 것을 포함하여 가입자의 생애주기 와 관련하여 포괄적인 의사소통 체계를 도입해야 함
  - 현재의 투자 가이드라인을 완화하여, 회원국은 IORPs가 장기투자 하는 것을 제한할 수 없으며, 국경 간 사업을 영위하는 IORPs에 대해 추가적인 규제를 할 수 없음
  - 특히 투자 의사 결정 시 IORPs가 환경·사회·지배구조와 같은 비재무적인 이슈를 고려하는 ESG(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투자를 하도록 의무조항을 신설함
- IORP II는 규제가 서로 다른 회원국들 간 감독자들의 의사소통 시간 및 비용을 단축하는 국경 간 퇴직연금 승인 프로세스 변경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sup>5)</sup>

■ 유로지역의 IORP II 이행은 회원국마다 퇴직연금 규모 및 IORPs에 대한 규제 차이, 그리고 리스크 평가와 연금급여 작성 등에 따른 비용과 추가 인력 투입 등으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음 [kiri](#)

3) 박광석(2005. 6), 「인구 고령화에 따른 연금제도 개정이 유로 채권시장에 미치는 영향」, 한국은행

4) BNY MELLON(2019), “Institutions for Occupational Retirement Provision II”

5) Linklaters, UK Pensions - New cross-border and governance requirements: IORP II